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조미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3월 13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오산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가장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노인세대 <input type="checkbox"/> 기 타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가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